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판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7391

발의연월일: 2022. 9. 16.

발 의 자:김용판·하영제·서범수

이채익 • 서일준 • 박대수

조수진 • 박덕흠 • 김영식

박성민 • 이달곤 • 이주화

김학용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 따르면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아동복지시설 등 어린이 이용시설의 관리자 등이 해당 시설의 종사자에게 응급처치 실습등의 안전교육을 매년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이 의무화되어 있지만 이에 대한 예산 지원이 부재하여 안전교육이 부실하다는 지적이었고, 또한 안전교육 실시 현황 등도 제대로 파악되지 않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의 어린이 안전교육 실시에 따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현행 대통령령에 규정된 어린이안전교육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상향·보완하여 안전교육 실시 현황 등이 체계적으로 관리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3항, 제16조의2 신설).

법률 제 호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중 "시행할 수 있다"를 "시행하거나 어린이이용시설 관리주체에게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로 한다.

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16조의2(어린이안전교육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① 행정안전부장관 은 어린이안전에 관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고 어린이안전교육 실시 현황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정보시스템(이하 "어린 이안전교육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어린이안전교육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수집·관리·보유할 수 있으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어린이이용시설 관리주체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어린이안전교육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4 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해당 정보를 보호하

여야 한다.

- ④ 어린이안전교육관리시스템은 「영유아보육법」 제9조의3에 따른 보육정보시스템과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4에 따른 교육정보시 스템과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다.
- ⑤ 그 밖에 어린이안전관리시스템 구축·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혅 행 개 정 아 제16조(어린이안전교육) ① ~ ③ 제16조(어린이안전교육) ① ~ ③ (생 략) (현행과 같음)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 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에 따른 어린이안전교육을 지 도·감독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 우 어린이안전교육을 직접 시 행할 수 있다. 하거나 어린이이용시설 관리주 체에게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 다. ③ • ④ (생 략) ③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6조의2(어린이안전교육관리시 스템의 구축·운영) ① 행정안전 부장관은 어린이안전에 관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고 어린이안전교육 실시 현황 등 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 여 정보시스템(이하 "어린이안 전교육관리시스템"이라 한다) 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어린이안 전교육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 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수집.

관리·보유할 수 있으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어린이이용시설 관리주체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어린이안 전교육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 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따른 고유 식별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 리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안 전부장관은 「개인정보 보호 법」에 따라 해당 정보를 보호 하여야 한다.
- ④ 어린이안전교육관리시스템은 「영유아보육법」 제9조의3에 따른 보육정보시스템과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4에 따른 교육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다.
- ⑤ 그 밖에 어린이안전관리시 스템 구축·운영에 필요한 사항

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